

#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해 알려드려요~!

##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?

###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

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·운영합니다.  
즉,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, 안전사고의 예방,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,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것입니다.

(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, 보건복지부 「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가이드라인」)

##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 한눈에 알아보기!

### 열람요청

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

※ 작성해야 할 서류  
「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」

※ 작성사항  
-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 
-영상기록기간, 설치장소,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

### 열람 결정 통지

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을 고려 후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

※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 
「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」

※ 확인사항  
-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 
-열람형태, 열람일시 및 장소  
-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

### 열람

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,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

※ 열람을 위한 준비물  
-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(정당한 열람권 확인 용도)

※ 확인사항  
-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

## 어떤 이유일 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?

-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(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)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열람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.
- 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, 열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.
- 어린이집 CCTV 설치·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열람 요청을 한 경우, 또는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 CCTV 열람요청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?

-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영상자료 보관기간(60일) 경과로 파기한 경우
-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
**열람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
##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!

-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-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
